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440

발의연월일: 2025. 3. 28.

발 의 자: 박해철·김태선·송옥주

강선우 • 박홍배 • 김 윤

임미애 • 박지원 • 강유정

이정문 · 복기왕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시 100인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중 장애인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그 부담금 산정을 위한 부담기초액을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부담기초액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일부 사업 주들이 장애인들을 직접 고용하기보다 부담금 납부를 택함으로서 장 애인 고용촉진을 통한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 유지라는 법의 목적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담기초액 산정 기준의 하한을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5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대 100분의 80까지 상향함으로서 의무고용사업 장의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고 장애인 고용 촉진과 인간다운 삶에 이 바지하고자 함(안 제33조).

법률 제 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60 이상의 범위에서"를 "65 이상의 범위(단, 상시 1,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80 이상, 상시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경우에는 100분의 75 이상, 상시 300명이상 500명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에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부담금 기초액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장애인 고용의무 미달에 대한 고용부 담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①·② (생 략)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부담기초액은 장애인을 고 용하는 경우에 매월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의 평균액을 기초 로 하여 고용정책심의회의 심 의를 거쳐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 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의 범 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 ----65 이상의 범위(단, 상시 여 고시하되, 장애인 고용률(매 1,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 하는 사업주의 경우에는 최저임 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의 총수에 대한 고용하고 있는 금액의 100분의 80 이상, 상시 장애인 총수의 비율)에 따라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근 부담기초액의 2분의 1 이내의 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경우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다 에는 100분의 75 이상, 상시 30 만, 장애인을 상시 1명 이상 고 0명 이상 500명 미만의 근로자 용하지 아니한 달이 있는 경우 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경우에는 에는 그 달에 대한 사업주의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70 이상) 부담기초액은 「최저임금법」 에서-----에 따라 월 단위로 확산한 최 저임금액으로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 ① (생 략)	④ ~ ⑪ (현행과 같음)